

제 호

[] 취소
수상구조사 자격 통지서
[] 정지

성명	생년월일
주소	자격등급
자격 번호	번호
행정처분 결정내용	정지처분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 (일간)
	취소처분 년 월 일

사유

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

-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상구조사 자격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경찰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.
- 자격증 취소처분·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(행정소송은 1년)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